

## ■ 판례 동향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해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 품목분류 동향

드론 카메라의  
품목분류와  
제8806호 소호  
분류체계의 문제점

## ■ 개정법령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고시

# 농수산물 수출 대폭 늘어난 해외항만, 주역은 '콜드체인'





## 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 회원이 되시면 매주 배송료 부담 없이 간행물을 받아볼 수 있고, CUSTRA 홈페이지(www.custra.com)를 통해서 주요 기사 및 법령 개정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기간 중에는 구독료가 인상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 정기구독료 1년 360,000원(월 30,000원)  
년 48회 발행

### 정기구독 신청 방법

- CUSTRA 홈페이지 : www.custra.com
-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 이메일 : know@kctdi.or.kr
- 전화 : 02-3416-5112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96-01-0015-75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인	이찬기
편집인	김재현
총괄	권송미 vksm73@kctdi.or.kr
편집기획	이상혁 knight1229@kctdi.or.kr
취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디자인	이승훈 lsh0910@kctdi.or.kr
마케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함동규 hdk0929@kctdi.or.kr
인쇄	경성문화사
배포	(주)아리디엠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4년 10월 21일(통권 제2103호)
I S S N	2799-7251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가격	7,500원
홈페이지	www.custra.com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CUSTRA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농수산물 수출 대폭 늘어난 해외 항만, 주역은 '콜드체인'

**06 Weekly News****관세행정실무해설**

- 16** 관세행정안내  
한·미 FTA 혼합물 규정에 따라 수지(RESIN)에 착색제를 첨가하는 경우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21** 질의응답사례  
감면

**판례동향**

- 23** 관세판례해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해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품목분류동향**

- 37** 품목분류해설  
드론 카메라의 품목분류와 제8806호 소호 분류체계의 문제점
- 43** 품목분류 M.A.P  
깻잎 가루 분류사례
- 47** 세번 바로잡기  
풀오버(Pullover)
- 49** 상식 밖의 상품학  
차세대 스마트폰 'AR 안경'

**최신개정법령**

- 52** 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고시
- 61** 입법예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폐지(안) 행정예고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농수산물 수출 대폭 늘어난 해외 항만, 주역은 '콜드체인'

KMI, “원료 조달·가공·포장·수출까지 가능한 푸드테크로 고부가가치 창출” 제안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양적 성장에만 치중할 것이 아닌 질적 성장에 주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0월 14일 'KMI 동향분석 201호'를 발표하며 항만 기능 확대로 질적 성장을 이뤄내야 하며, 특히 고부가가치 콜드체인 시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6%로 2025~2026년은 2.7%로 전망됐다. 2010~2019년 기간 성장률 대비 0.5%p 낮은 수치다. 2017년 이후 세계 GDP 성장 대비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즉, 컨테이너 성장률이 GDP 성장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항만 물동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0~2015년 5.8%에서 2020~2023년에는 0.7%로 둔화됐다. 2019년 이후 국내 GDP 대비 항만 물동량 성장률도 전 세계 추이와 동일하게 계속해서 하락했다. 7월 30일 해양수산부는 2023년 국내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이 3,000만TEU를 넘겼다고 발표하며 주요국과의 수출입 증가에 힘입어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했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높은 해상운임 등 항만물류 여건 불확실성으로 물동량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KMI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항만 및 항만 배후단지에 콜드체인 허브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농수산물 수출 클러스터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초기 항만이 국가 간 교역을 위한 화물처리 기능만 했다면, 세계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물류시장이 급변하면서 각국의 무역항들은 새로운 시도를 꾀하고 있다. 하역이나 보관기능에 그치지 않고 정보, 첨단기술 등과 결합해 복합 클러스터이자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단연 주목받는 것은 콜드체인이다.

시장조사기관 프리시던스 리서치(Precedence Research)에 따르면 세계 콜드체인 시장은 향후 10년(2024~2034년)간 연평균 14.5%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2030년까지 연간 21.1% 성장하는 등 콜드체인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콜드체인 시장에서도 가장 유망한 부문은 농수산물을 제조·가공해 수출입하는 식품 부문이다.

세계 주요국의 항만들은 콜드체인을 활용해 농수산물 가공·수출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세계 2위 농산물 수출국인 네덜란드는 2023년 농산물 수출액(1,362억 달러)의 33.7%(459억 달러)가 수입 농산물 가공 후 재수출이었다. 2019~2023년 농산물 수출액은 연평균 6.1% 증가했는데, 그중 재수출은 연평균 10.5% 증가했다. KMI는 네덜란드가 이 같은 수출액을 기록한 것은 로테르담항 인근에 대규모 콜드체인 허브를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로테르담항 APM 터미널 내 콜드체인 물류창고를 구축해 운송비 절감, 화주의 신뢰성 제고, 보안 관리 용이, 에너지 효율 등의 효과를 거뒀다는 것.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즉시 보관부터 취급, 가공, 통관, 보안 등이 모두 가능하게 됐다.

그런가하면 미국의 오클랜드항은 美 서부해안 중심부라는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해 콜드체인 주요 수출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연간 100만 톤의 신선제품을 처리할 수 있는 콜드체인 창고시설을 구축했는데, 터미널과 인접해 운송 프로세스가 단축되고 운송 및 에너지 비용이 절감됐다. 2023년 기준 냉동 컨테이너를 통한 수출액 약 71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미국 항만 중에서 냉동 컨테이너 수출 7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벨기에의 앤트워프항은 항만에 다양한 콜드체인 화물 처리가 가능한 17만 5,000개 이상의 온도 제어 팔레트 보관 창고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항만 내 세관과 식품 검사 시설이 통합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농수산물 수출입 상황은 어떨까? 여전히 수입이 수출보다 4배 많다. 하지만 2023년 1억 달러 이상 수출된 농수산물 15개 품목 중 11개 품목이 가공품일 정도로 최근 가공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농수산물 제조·가공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꼽힌다. 2020년 농림·어업의 부가가치율은 50.5%로 전 산업(44.7%)이나 제조업(28.8%) 대비 높은 편이다.

KMI의 박민정 연구원은 “항만은 농수산물 수입과 가공 후 수출, 콜드체인 산업을 연계하기에 최적지”라며, “콜드체인 운영과 푸드테크가 접목되면 농수산물 수출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농수산물 수출입의 99.6%가 항만에서 처리되고 있고 가공 및 푸드테크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넓은 자유무역지역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푸드테크는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사업을 말한다. 박 연구원은 농수산물 수출입 규모가 큰 항만을 중심으로 콜드체인 시설을 마련해 고부가가치 농수산물 수출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부산항은 최근 냉동 컨테이너의 환적 비율이 2006년 39.8%, 2016년 41.9%, 2023년 54.1%로 증가하는 등 국내 농수산물 대부분을 수출입하는 항만이다.

KMI는 항만 배후단지에 농수산물 가공업체와 관련 서비스를 연결해 원료 조달부터 가공, 포장, 수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봤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수요 예측, 재고 관리, 온습도 유지, 반출입량, 원산지 등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푸드테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수출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항만 배후단지에 커피 생두 가공무역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부가가치 창출이 유망한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연구원은 이를 위해서는 농산물 제조·가공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전량 재수출, 재고관리 시스템 구축, 보세사 채용, 원재료 수량 증빙자료 제출 등 자유무역지역 입주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는 입주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 이와 동시에 농산물 가공 관련 심사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해 밀수를 비롯한 리스크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업들의 푸드테크 활용도를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 플랫폼을 마련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김성은 기자 |

## 정부, 미국 내 물류 공급망 확대로 공급망 재편 대응

### LA에 이어 시카고 인근 엘우드 물류센터 착공 ... 2026년 본격 운영 계획

중소·중견기업이 미국 시장 진출 시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류 인프라가 미국 내 속속 들어서게 돼 기업의 안전재고 확보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미국 일리노이주 엘우드(Illinois Elwood)에 한국해양진흥공사와 CJ대한통운이 민관합작 물류센터 건립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엘우드는 북미 최대 철도 회사인 유니언 퍼시픽 철도(Union Pacific Railroad)와 BNSF 철도(BNSF Railroad)의 터미널이 인접해 있는 미국 내륙 물류의 중심지다. 도로와 철도, 항공교통이 우수해 미국 전역에 이틀 내 운송이 가능해 우리 기업들의 이용 수요도 높은 곳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착공하는 엘우드 물류센터는 건물 10만 2,775㎡(3만 1,089평), 부지 29만 5,390㎡(8만 9,355평) 규모로 조성되며, 자율주행 로봇, 무인지게차 등 최신 운영시스템과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엘우드 물류센터를 이용할 경우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통해 미국 각지에 진출한 우리 중견·중소기업의 안전재고 확보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진공과 CJ대한통운은 이번 엘우드 물류센터를 비롯, 미국 일리노이 데스 플레인스(Des Plaines)와 뉴저지 시카우커스(New Jersey Secaucus)에 추가로 물류센터를 구축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해외 물류펀드 조성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 물류시장 개척 지원사업을 추진해 2027년 까지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5개소에서 11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하구현 기자 |

#### ● 해외 주요 물류거점 물류센터 운영 현황 ●

지역		규모 (창고, m <sup>2</sup> )	참여주체	주요 내용
네덜란드	로테르담	5만 (상온 3만)	BPA	◆ 2022년 1월 개장
스페인	바르셀로나	8만 9,000 (상온 8만 9,000)	BPA, 바르셀로나 PA	◆ 2022년 6월 개장
인도네시아	자바 (프로볼링고, 수라바야)	2만 3,000 (상온 1만)	공공기관(BPA, KIND), 한상기업(PK社)	◆ 2021년 9월 프로볼링고 개장
		1만 3,000 (상온 1만 3,000)		◆ 2023년 5월 수라바야 개장
미국 서부	LA (LA·LB항 인근)	1만 7,000 (상온 8만 5,000)	BPA, 주성씨엔에어	◆ 2024년 9월 개장

## 10월 17일 인니 할랄 인증 의무화 ··· 우리 준비 상황은?

인도네시아가 5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10월 17일부터 할랄인증 표시를 의무화한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을 본격 시행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에 따른 수출기업별 준비 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10월 15일 유관기관, 수출기업 등과 점검회의를 열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식음료를 시작으로 2026년 화장품, 의류, 건강보조식품, 가정용품, 사무용품 등 사실상 전 품목으로 할랄인증 의무화를 확대한다. 할랄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인도네시아에 제품 수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인구의 약 90%인 2억 3,000만 명이 이슬람교도인 만큼 인증이 없다면 구매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할랄 제품이 아닌 경우 별도 라벨링해 마트 내 별도 섹션에서 판매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對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실적은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누적 기준 1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2024년 8월말 기준 인도네시아에 수출 중인 품목 중 할랄인증이 필요한 가공식품의 수출액(정보제공 동의 업체 기준)은 1억 1,260억 달러이며, 그중 할랄인증을 취득한 기업의 수출액은 1억 720만 달러로 95.2%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국내에서 할랄인증을 받아 인도네시아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9월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할랄식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11월 국내 인증기관 중 KMF(한국이슬람교), KHA(한국할랄인증원)이 인도네시아 인증기관(BPJP)과의 상호인정협약(MRA)을 체결했고 올해 10월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BIC(부산인도네시아센터)가 추가로 체결해 이를 적극 활용하라고 전했다.

## 슈가애플·구아바 등 수입금지 생과실류 특별검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해외 직접구매(직구) 이용자와 여행객,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국제우편과 탁송, 휴대 등을 통한 외국산 수입금지 생과실류 불법반입이 우려되고 있어, 생과실류 유통 성수기를 맞아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한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 동안 주요 공항·항만에서 탁송품, 우편물의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하고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세관 및 국제우편물류센터와 합동 검사를 추진한다. 소량화물(LCL, Less than Container Load) 창고 순회 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생과실류 등 금지품이 발견되거나 의심되면 전량 검역을 실시한다.

또한 전국 1,400여 개 외국인 식료품점, 전통시장 등을 단속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쇼핑몰 감시 활동을 통해 슈가애플, 구아바 등 수입금지 외국산 생과실류가 적발되면 전량 수거·폐기되고 이를 수입·유통하는 자는 수사를 거쳐 사법당국에 송치 또는 관계기관에 「식물방역법」 제47조 제4호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

| 김성은 기자 |

## 신흥시장 수출 성장세 ↑, 기술규제 애로도 ↑

### 3분기 TBT, 동아프리카 국가 식의약품·농수산물 분야 기술규제 통보 건수 증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누적 건수로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식의약품 및 농수산물 분야를 중심으로 동아프리카 국가에서 기술규제 통보 건수가 증가하면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3분기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16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증가하고 누적 건수로도 3,176건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공개한 올해 3분기 TBT 현황에 따르면, 우간다(122건), 탄자니아(107건)와 케냐(104건) 등 동아프리카에서 식의약품 및 농수산물 분야 등의 기술규제를 전 분기 대비 2배 이상 통보하며 상위를 차지했고, 미국(94건)이 그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1.8%), 농수산물 분야(21.2%), 화학세라믹 분야(15.9%)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됐다.

#### ●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상위 10개국(단위 : 건) ●

국가	우간다	탄자니아	케냐	미국	르완다	부룬디	브라질	중국	태국	일본
3분기	122	107	104	94	85	85	45	43	26	25
누적	312	229	230	302	200	186	151	143	64	55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 국가가 통보한 기술규제는 311건(26%)으로 전년(323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16.7%), 화학세라믹 분야(15.1%), 교통안전(14.5%) 분야가 상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자동차 및 항공 관련 규제, 에너지 라벨링, 화학물질 규제 등 주요 수출 산업과 관련된 기술규제 등 94건을 통보했다. 중국은 생활용품, 전기안전 관련 기술규제 등 43건을 통보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식품, 가전기기 관련 등 23건을 통보하며 지난 분기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진중욱 기표원장은 “신흥시장에서의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는 만큼 기술규제 애로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해외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의 컨설팅과 설명회를 통해 신속한 정보제공과 대응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하구현 기자 |

#### ● 산업별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비중 ●



## 역대 최대규모 '2024 수출 붐업코리아 Week' 개막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62개국 1,000여 개사 바이어 방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해외 바이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내 기업과의 비즈니스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수출 붐업코리아 Week'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 붐업코리아 Week는 행사 주체와 범위,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KOTRA가 중심이 돼 수도권 위주의 상담만 개최했으나, 이번 행사부터는 코엑스, 벅스코, 킨텍스, 엑스코 등 전국 주요 전시장과 전시회 운영사, 지자체 등 다양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한다. 행사 참여 기업 또한 국내기업 3,000여 개사와 바이어 1,000여 개사에 달한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수출 마케팅을 위해 참여기관이 원팀으로 협업해 연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KOTRA 해외 무역관이 제품 소싱수요가 있는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면, 전국 전시회가 협업해 국내 유관 제품과 매칭 후 비즈니스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하구현 기자 |

### ● 2024 수출 붐업코리아 Week 행사일정 ●

14	15	16	17	18	19	20
		(일산) 아시아콘크리트엑스포(10월 16~18일)				
		(일산) 국제모빌리티산업전(10월 16~18일)				
		(일산) 금속산업대전(10월 16~18일)				
		(부산)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10월 16~18일)				
				(부산) 부산의료기기전(10월 18~20일)		
21	22	23	24	25	26	27
		(서울) 한국전자전(10월 22~25일)				
		(서울) 반도체대전(10월 23~25일)				
		(서울) 카본코리아(10월 23~25일)				
		(일산) 수출붐업코리아 (10월 22~23일)				
		(일산) 로보월드(10월23~26일)				
		(일산) 콘텐츠코리아 고양 미래형모빌리티박람회 디지털미디어테크쇼 & 디지털퓨처쇼 인공지능박람회(10월 23~25일)				
		(일산) 한국국제건설기계전(10월 24~27일)				
		(대구) 미래모빌리티엑스포(10월 23~26일)				
		(대구) 대한민국ICT융합엑스포(10월 23~26일)				
		(인천) 국제치안산업대전(10월 23~26일)				
		(창원)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10월 23~25일)				
28	29	30	31	11. 1	11. 2	11. 3
		(일산) 소부장뿌리기술대전(10월 30~11월 1일)				

## 해외 지재권 출원, 서울에서 WIPO 직원과 상담하세요

서울에서 특허, 상표 등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국제 지식재산(IP)분쟁 조정 등을 상담할 수 있게 돼 우리 기업들의 편의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직원이 특허청에 파견돼 서울 사무소에서 업무를 10월 14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작년 2월 WIPO 사무총장 방한을 계기로 우리 정부에 한·WIPO 간 인력 교환 프로그램 제안에 따라 이뤄진 WIPO 직원의 특허청 파견은 WIPO가 회원국에 인력을 파견한 첫 사례다.

이번에 파견된 안제이 잛코프스키 변호사는 WIPO의 PCT 국제특허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분쟁조정 등 여러 서비스에 대한 상담, 홍보와 한국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WIPO 전문가의 한국 파견으로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인 한국 기업들이 시간 제한 없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인력 교환 프로그램을 지속해 우리 출원인의 WIPO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향후 WIPO 지역사무소 한국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WIPO 직원의 특허청 파견 기간은 10월 14일부터 내년 7월 13일까지 9개월이다.

## 중국産 PET 수지 최대 7.98%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국産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ET)에 대해 향후 5년간 7.00~7.98%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무역위원회는 10월 17일 제453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産 PET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향후 5년간 7.00~7.9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베트남産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덤핑방지관세가 3.66~11.37% 부과된다. 무역위는 해당 조사 건에 대해 덤핑수입과 국내 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조사 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장관에게 건의했다.

한편 국내기업인 오스테오시스가 국내기업 A를 상대로 신청한 체성분 분석장치 영업비밀 침해 조사 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중국産 탄소강 및 그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무역위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産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OPP 필름) 반덤핑조사 국내산업피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OPP 필름 반덤핑조사는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2025년 2월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 하구현 기자 |

##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두바이서 400만 달러 수출 성과

### 아랍에미리트 정보통신지원센터 개소, AI·디지털기업 위한 중동 거점 1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우리나라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이 10월 14~15일 진행됐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하는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통해 한국 96개 기업은 전 세계 IT 기업과 혁신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인 자이텍스 글로벌(GITEX GLOBAL) 중 스타트업 중심의 'EXPAND NORTH STAR'에 한국 디지털 공동관을 구성, 유망 디지털 기업의 기술과 서비스를 세계에 선보였다.

10월 14일 디지털 수출개척단은 국내 디지털 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주관의 韓·중동 디지털 사업 협력관계 구축 행사를 열었다. 중동 기업과 투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3건의 수출계약과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기업인 코어무브먼트의 AI 기반 맞춤형 건강돌봄 제품은 사우디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고, 지니언스의 지능형 보안 소프트웨어 제품과 H2O 호스피탈리티의 숙박업 관련 소프트웨어 제품은 4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는 실시간 화상 서명 서비스로, 리콘랩스는 가상모형 해결책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월 15일에는 두바이 미래재단과 NIPA가 韓·아랍에미리트 인공지능 지도자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는 아랍에미리트의 각 부처별 AI 정책을 담당하는 최고 AI 담당관(Chief AI Officer, CAIO)들과 한국의 우수 AI·디지털 기업들 간 최초의 만남이었다. 토론회에서는 6개 국내 기업들의 항공안전, 고객센터, 지능형 도시, 교통, 건강돌봄 등에 AI를 도입한 우수 사례 발표와 함께 초거대언어모델(LLM)을 보유한 기업의 다양한 응용 방안 등이 소개됐다.

이날 오후에는 두바이 미디어시티에 위치한 아랍에미리트 정보통신지원센터 개소식이 있었다. 정보통신지원센터는 중동 거점 1호로 한국의 AI·디지털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입주공간, 자문, 판촉, 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한다.

아랍에미리트 정보통신 지원센터에 입주한 보안 관련 기업 관계자는 “기회의 땅이자 낮은 중동 시장을 개척하려는 정보통신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기정통부의 이번 센터 개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센터를 통해 현지 기업들과 연결되고 한국 기업들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체제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韓·아랍에미리트 양국 정상 간 국빈방문을 계기로 협력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이 시기에 아랍에미리트 정보통신지원센터가 개소했다”며, “이를 계기로 한국의 유망 디지털 기업들의 중동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김성은 기자 |

## 한국 드론 이탈리아 하늘 날까

KOTRA와 항공안전기술원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개최되는 ‘드론이탈리(DronItaly)’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 이탈리아 및 유럽 시장공략을 위한 ‘韓·이탈리아 드론 협력사업’을 추진했다.

유럽연합(EU) 3대 경제 대국인 이탈리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4%로 유럽 내에서 독일과 함께 제조 강국이다. 특히 항공·조선·기계·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조 역량이 우수하며, 드론 활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제조·방산·농업에서 드론 활용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어 관련 이탈리아 기업 수가 650개사를 넘는 등 유망 산업으로 꼽힌다.

이번 행사는 이탈리아의 산업 환경과 드론 수요에 발맞춰 산업 설명회, 기업 피칭, 전시·수출 상담회, 한국 항공안전기술원(KIAST)·이탈리아 민간항공청(ENAC)과 MOU 체결 등으로 구성됐다. 한국에서는 드론이탈리 행사에 드론 기체, 부분품(GPS, 경량 배터리, 센서 등), 솔루션 관련 기업·기관 9개사가 참가했다. 드론기체 제조사 등 이탈리아의 글로벌 기업들과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 현지 제조사들은 한국산 소형 모터와 경량 배터리, 수신기 등 드론 전용 부분품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실내 시설물 점검용 드론, 고중량 배송드론, 공간정보 수집 소프트웨어 등 우리 산업용 드론과 솔루션을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됐다.

KOTRA 홍정아 밀라노무역관장은 “제조업 역량과 첨단산업에서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이탈리아 드론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크다”며 이탈리아 시장 진출 기회를 계속해서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해외경제정보드림에 컨테이너선운임지수 실시간 공개

KOTRA는 10월 15일부터 해외경제정보드림 플랫폼을 통해 한국해양진흥공사(KOBC)가 발표하는 KOBC 컨테이너선운임지수(KCCI)와 해운시황 분석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KOTRA에 따르면,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은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의 운임 변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인 물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기관 및 수출 관련 협력기관과의 데이터 통합을 통해 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겪는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맞춤형 해외 진출 정보 제공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KOBC 김형준 사업전략본부장은 이번 서비스에 대해 “KOBC 해상운임지수 개발·운영의 큰 성과이며 앞으로도 KOBC 해상운임지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경제정보드림은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등 총 83개 협력기관이 데이터를 통합해 각종 해외 진출 정보와 지원 사업을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현재 AI 분석 기능 강화를 추진 중이다.

| 김성은 기자 |

## 정부·유관기관 적극 뒷받침으로 한국문학 해외 진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16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문학의 국내외 저변 확대와 해외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문학의 해외 홍보 및 출판지원 사업, 작가·출판인의 국제교류 지원사업 등을 점검하고, 향후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보완이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연간 30% 이상 번역출판 지원사업 수요가 늘고 있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국내외 출판사 등의 번역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번역출판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내년 문체부 예산안에서 문학 분야 진흥을 위한 예산은 작년 대비 7.4% 증가한 485억 원이다. 특히, ▲한국문학번역원의 한국문학번역출판 지원사업 31억 2,000만 원(전년 대비 8억 원 증액), ▲한국문학 해외 소개·홍보 관련 예산 45억 4,000만 원(전년 대비 4억 5,000만 원 증액)을 편성해 내년에는 우리 문학의 해외 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문학 저작권 거래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런던 도서전 등 해외 도서전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재외한국문화원 등 유관 공공기관과 협업해 해외 독자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 하구현 기자 |

## 수은, 수소산업 밸류체인 쏠분야 금융지원 강화

한국수출입은행이 청정수소 선도국가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저장·운송·활용에 이르는 수소 밸류체인 쏠분야의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정책을 시행한다고 10월 17일 밝혔다.

수은은 수소산업이 미래 친환경에너지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정책지원이 필수라고 판단하고 우리나라가 청정수소 분야에서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기업의 금융 수요에 맞춰 금융지원 방향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청정수소는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력원을 활용한 전기분해 방식으로 생산된 수소(그린수소) 또는 화석연료 추출 방식으로 생산됐으나 배출된 탄소가 상당수 포집·저장돼 배출량이 현격히 줄어든 수소(블루수소)다.

따라서 수은은 수소 분야에 대출한도 최대 10%p 확대, 기업 규모별 금리 및 수수료 차감 등 경쟁력 있는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탄소 감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발굴 지원도 강화한다.

수은은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사업 선정 시 수소 분야 사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해 초기 사업 개발 및 잠재 사업군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 하구현 기자 |

## 글로벌 상품 교역환경 불확실 ... 서비스 산업 수출 동력 삼아야

日·獨·네덜란드 등 제조업 강국도 서비스 수출 비중 확대, 韓 20년 이상 정체

상품 교역환경의 불확실성 장기화로 세계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십 년간 정체돼 있는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0월 17일 발간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수출 동향 및 국제경쟁력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상품 수출은 세계 8위를 기록한 반면, 서비스 수출 규모는 세계 18위권으로 1,235억 달러 수준에 그쳤다.

또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액이 연평균 13.1%의 증가세를 보인 데 반해 서비스 수출액은 연평균 1.7%로 더디게 증가했다. 서비스 수지 적자 또한 10년 전에 비해 4배 가까이 확대됐다.

최근 10년간 일본·독일·네덜란드 등 주요 제조업 강국들이 서비스 수출 비중을 빠르게 늘려온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비중은 2000년 이후 15~16%로 정체돼 있는 상태다. 실제로 보고서가 무역특화지수(TSI)와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RSCA)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새 우리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서비스 산업의 TSI는 2013년 -0.030에서 2023년 -0.097로 하락하며 수입 편중도가 심화됐다. 대칭적 RSCA 역시 2013년 -0.136에서 2023년 -0.205로 하락해 우리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주력 수출 업종인 운송업의 수입 특화 전환, 여행·기타사업 서비스의 수입 특화 지속, 유지보수·보험·금융 업종의 비교열위 지속 등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전반의 경쟁열위를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반면, 콘텐츠·IT 등 일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문화·여가 업종은 한류 콘텐츠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주요 11개 업종 중 유일하게 수출 특화와 비교우위로 동시에 전환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문화 확산에 힘입어 통신·컴퓨터·정보 서비스는 아직 비교열위지만, 최근 10년간 RSCA가 가장 크게 상승(+0.507)했다.

보고서는 제조업 강국들이 서비스 수출 비중을 빠르게 늘려가며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추세를 고려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양적 수출 확대 및 질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콘텐츠와 소비재를 융합한 수출 등 ▲우리 산업의 강점을 살린 독자적 서비스 수출 모델 수립, ▲공공성이 짙은 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개혁 프로세스 구축, ▲서비스 기업 육성의 법적 근거가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재제정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하구현 기자 |

## 부산항 민관 물류 개선협의회서 보세운송 관련 건의

부산세관은 10월 15일 ‘부산항 민·관 물류개선협의회’ 회의를 열어 물류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회의에는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운협회, 한국관세물류협회,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등 부산항 물류업계를 대표하는 선박회사·보세구역운영인·부산항만공사 등 10개 기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美·中 무역갈등, 글로벌 선사 동맹의 재편 등 급변하는 대내외 물류환경으로 인한 업계별 영향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보세운송 배차예정정보 제출 및 검사절차 효율화, 특허보세구역 반입화물 장치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한 북항 재개발과 관련해 자성대부두의 신감만부두로의 원활한 이전 방안에 대해 부산항만공사, 터미널운영사 등 참석한 기업 간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 인천세관, 페트병·금속캔 등再生资源로 수출기업에 EPR 제도 알려

인천세관은 10월 11일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공동으로再生资源(페트병, 금속캔 등) 수출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환경공단과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는 국내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EPR 제도(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신규 시장 선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주제로 발표하고, 인천세관은再生资源로 수출 시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FTA 유의사항과 그동안 간접수출기업이 수출신고번호와 수출금액 등을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던 관세환급 신청 방법 및 베트남 내국수출기업지원제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해외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관세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주시경 인천세관장은 “再生资源 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수출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협,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추이 전망

미국, EU 등 선진국의 경제안보, 환경, 산업 정책이 전략적으로 융합되는 양상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추이를 알아보는 행사가 열린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월 23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대응 방향’ 세미나를 개최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향후 전개 상황을 전망하고, 우리나라 경제 및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新무역장벽의 한국경제 영향 및 대응’을 주제로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하며, 버나드 호크먼 전 세계은행 국제무역국장 겸 유럽대학연구소(EIU) 교수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향후 추이’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패널 토론에는 정철 환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출신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 등 국제통상 전문가가 참여한다.

# 한·미 FTA 혼합물 규정에 따라 수지(RESIN)에 착색제를 첨가하는 경우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홍재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미 FTA
질문	한·미 FTA 혼합물 규정에 따라 수지(RESIN)에 착색제를 첨가하는 경우 한·미 FTA 특혜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지(RESIN)에 착색제를 첨가한 경우에는 한·미 FTA 협정 제7부 규칙 2(혼합 및 배합 원산지)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한국 측은 한·미 FTA 협정 제7부 규칙 2(혼합 및 배합 원산지)에 따른 혼합물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음.

## 2. FTA 원산지 결정기준

### (1) 개요

수입물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각 협정에 있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실제로 충분가공원칙, 역내생산원칙, 직접운송원칙 등 원산지 제규정을 충족해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이를 단순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을 충족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PSR은 일반적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특정공정기준)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가공공정기준은 품목별이 아닌 특정 산업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특히 관세율표 제6부의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이나 제7부의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들은 일부 FTA에서 화학반응이나 혼합 및 배합과 같은 공정으로 실질적 변형을 입증해 원산지판정이 가능하다.

이번 호에서는 한·미 FTA에 존재하는 가공공정기준의 해석상 수지(RESIN)에 착색제를 첨가하는 공정만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 (2) 가공공정기준

가공공정기준은 협정에서 정한 특정 가공공정을 수행한 경우 해당 가공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FTA 실무상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통해 원산지 판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공공정기준은 석유제품, 화학제품, 플라스틱제품, 고무제품, 섬유제품 등 특정 산업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그 중 HS Code 제6부(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나 제7부(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의 경우 가공공정기준이 적용되는데 제6부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한 규정이 대부분이다.

화학공업 생산품에 대한 가공공정기준은 제품의 가공공정이 ▲화학반응(CR, Chemical Reaction), ▲혼합 및 배합 원산지(Mixtures and Blends Origin), ▲정제(Purification), ▲입자 크기의 변화(Change in Particle Size), ▲이성체 분리(Isomer Separation), ▲표준물질(Standards Materials), ▲분리금지(Separation Prohibition)처럼 총 7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HS Code 가 다르다.

따라서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할 때는 각 협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한 후 적용해야 한다. 화학물품에 대한 가공공정기준이 도입된 가장 최근 협정은 RCEP이다. 다만 RCEP은 화학반응에 대해서만 가공공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적용 범위도 매우 좁다. RCEP에서는 제29류(제2901호, 제2902호, 제2907호, 제2909호, 제2914호, 제2916.15호, 제2920호) 및 제38류(제3811호, 제3824호)에 대한 원산지판정을 화학반응(CR)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한·미 FTA HS Code 제7부에 대한 가공공정기준

한·미 FTA에서는 협정문 제6장(원산지) 부속서 가 제2부에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HS Code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제시하며 주 규정이 정해진 경우가 있는데 가공공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제6부나 제7부의 내용이 그렇다.

이번 질문 & 답변 내용의 주제인 제7부(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에 관한 주 규정은 다음과 같다.

### ● 한·미 FTA 제6장 부속서 가 제2부 ●

주	규정
주 1	제7부의 규칙 1 내지 규칙 5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이 부의 류 또는 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그러한 규칙에서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주 2	주 1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이 부의 원산지 기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기준 또는 적용 가능한 역내부가가치를 충족할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

해당 규정을 통해 제7부에 해당하는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이나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의 경우 각 HS Code별 정해진 PSR 외에도 주 1에 규정된 가공공정기준을 통해 원산지판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과거 관세청 질문 & 답변 사례에서 주 1과 주 2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원산지 상품인지, 아니면 주 1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주 2의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 상품인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관세청에서 주 2의 내용은 주 1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개별 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정하는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답변했다.

즉, 해당 주 규정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7부의 주 1의 내용은 제7부의 규칙(화학반응, 혼합 및 배합, 정제, 입자크기의 변화, 이성체 분리)을 충족하는 공정이 수행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고, 제7부 주 2의 내용은 주 1에서 정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HS Code에 따른 PSR을 충족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제7부의 주 규정상 가공공정기준에 대한 규정에는 화학반응, 혼합 및 배합 원산지, 정제, 입자 크기의 변화, 이성체 분리가 있으며, 그 중 이번 질문 & 답변의 주제인 혼합 및 배합 원산지 규정은 다음과 같다.

● 한·미 FTA 제6장 부속서 가 제2부 ●

규칙	규정
<p><b>혼합 및 배합 원산지</b></p> <p>규칙 2</p>	<p>제39류 및 제40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혼합 또는 배합(분산을 포함한다)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투입 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 생산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p>

### 3. 질문 & 답변 사례에 대한 해석

#### (1) 질문의 요지

질문 & 답변 사례는 한·미 FTA 혼합물 규정에 따라 수지(RESIN)에 착색제를 첨가하는 경우 한·미 FTA 특혜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다. 해당 물품은 수지에 착색제를 첨가(혼합·배합)하는 상황으로 현재 한·미 FTA 혼합 및 배합 원산지에 관해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혼합 및 배합 원산지에 관한 부분에서 원산지를 판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규정은 혼합 및

배합의 결과로 투입 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 생산돼야 한다는 것으로 이에 관한 해석이 중요하다.

## (2) 실질적 변형

원산지의 본질 자체는 해당 물품의 실질적인 변형이 해당 국가에서 수행됐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한·미 FTA 제7부의 가공공정기준의 경우 해당 물품의 품목(HS Code)에서 정하고 있는 세번변경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물품의 실질이 변경되는 여러 가지 공정을 수행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해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착색제는 색을 바꿀 목적으로 첨가되는 물질로 식음료뿐 아니라 화학산업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물질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그 물품을 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자체가 물품의 색을 바꾸는 것에 관한 부분이지 다른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 FTA 목적상 혼합 및 배합의 결과로 원산지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착색제 투입의 결과로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 생산돼야 한다.

질문 & 답변 내용에 자세히 설명돼 있지는 않지만, 착색제 첨가로 원래의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 생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도 수지(RESIN)에 착색제를 첨가한 경우에는 한·미 FTA 협정 제7부 규칙 2(혼합 및 배합 원산지)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이다.

## (3) 실무적 문제

혼합 및 배합 원산지에 관한 기준은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존재하는데, ①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혼합 또는 배합(분산을 포함한다)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해야 하고, ② 그 결과 투입 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해당 규정에서는 투입되는 원재료에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사례에서 문제가 된 착색제나 희석제 등 물품의 구성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여길 수 있는 재료가 투입돼 혼합 및 배합되는 경우 이를 원산지로 인정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즉 희석제가 포함돼 혼합 및 배합되는 경우 단순히 희석제를 포함한 것은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을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세계관세기구(WCO)의 원산지규정기술위원회(TCRO, 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에서는 배합 및 혼합(mixtures and blends)에 관한 흥미로운 의견들이 있다. 즉 희석제를 첨가(addition of diluents)하는 제조공정이 수행된 상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OPTION A(찬성)과 OPTION B(반대)가 존재한다. 찬성 의견에서는 해당 규정은 사용된 재료가 무엇이든 의도적이고 비례적으로 통제된 조건에서 수행되고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공정(희석제 첨가 공정)은 실질적인 변형에 해당하는 것이며, 의도적이고 비례적으로 통제된 조건에서 화학물질 등에 희석제만 첨가하는 것은 혼합 및 배합 작업의 중요한 측면을 구성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제품에 필요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달성하기 위해 순수 화학물질 등에 비활성 물질을 첨가하는 것은 전체 제조 공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그 결과로 제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이 투입된 재료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반대 의견에서는 혼합 및 배합의 맥락에서 혼합은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재료를 조합하는 것으로, 해당 공정의 수행으로 투입 재료의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돼야 하기 때문에 액체나 고체를 첨가하는 희석만으로는 1차 투입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단지 덜 농축된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할 뿐이고, 희석 전에 주원료의 성능 특성은 이미 확립돼 있으며, 이는 단지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일 뿐 새로운 상품을 창출하지는 않기 때문에 희석제를 첨가하는 것은 혼합 및 배합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한 결과 여부를 떠나서 현재 우리나라의 한·미 FTA 규정에는 희석제를 제외하거나 어떤 추가적인 물질을 제외(또는 포함)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재 한·미 FTA 협정에서는 투입되는 물질이 어떤 것인지를 고려하기 보다는 협정의 규정에 맞게 ①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혼합 또는 배합(분산을 포함한다)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해야 하고, ② 그 결과 투입 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질의 응답 사례

본 지면에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 수입통관 / 감면

#### 고령자용 보행기(롤레이터)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장애인용품으로 관세 면제가 가능할까요?

「관세법」 제9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세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의하신 물품이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이 아닌, 고령자가 사용하는 외출용 보행 보조차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 면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세화물 / 선박용품 하선 및 적재 절차

#### 선박 수리 중 외국 선박용품을 하선이나 적재하려는 경우 관련 절차가 궁금합니다.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선박용품 수리업자 및 선박회사가 수리·점검 등을 위해 외국 선박용품을 일시 하선하려는 때에는 선박용품 하선허가신청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 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역 및 그 이후 적재 등 관련 절차는 아래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조건부 하역 선박용품의 관리)

- ① 선박용품 수리업자 및 선박회사(이하 ‘수리업자 등’이라 한다)가 수리·점검 등을 위하여 외국 선박용품을 일시 하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선박용품 하선허가신청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용품 하선신청 및 허가는 법 제158조에 따른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의 신청 및 승인으로 본다.

- ② 수리업자 등은 조건부 하역한 외국 선박용품을 하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박에 적재(별지 제3호 서식)하고 세관장에게 완료보고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선박용품의 수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월의 범위 내에서 적재 기간을 연장하거나, 같은 선사 소속의 다른 국제무역선에 적재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수리업자 등은 조건부 하역 대상 선박용품에 대하여 직접 적재 등을 하거나 공급자 중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선박과 수리업체 간의 운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수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하선한 선박용품을 재적재 기한 내에 적재할 수 없는 때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한다.
- ⑤ 수리업자 등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이 입항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조건부 하역한 외국선박용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때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 ⑥ 수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하선한 선박용품을 허가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않거나 재적재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멸실되어 세관장에게 신고한 경우
  2.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

#### 품목분류 / 철제 구조물의 HS Code

### 항공기 수리용 철제 구조물의 HS Code를 알고 싶습니다.

문의하신 물품이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의 '기타'에 해당된다면 제7308.90-9000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되거나 미완성인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bar·rod)·관(管 : tube)·형강(形鋼 : angle·shape·section)·시트(sheet)·판(plate)·와이드플랫(wide-flat)[유니버설플레이트(universal plate)를 포함한다]·후프(hoop)·스트립(strip)·단조(鍛造)품이나 주조품을 리벳팅(riveting)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한다. ... <중략> ... 이 호에서 설명된 구조물과 그 부분품 외에도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도 또한 포함한다. 광산의 갱구 프레임과 상부 구조물 ; 조절 가능하거나 신축식의 지주·관(管) 모양의 지주·신축성이 있는 격자빔·관(管) 모양의 발판과 이와 유사한 장치 ; 수문·둑(부두)과 방파제 ; 등대의 상부 구조물 ; 돛대·(배와 육지사이의)트랩·난간·칸막이벽(선박용의 것) ; 발코니(balcony)와 베란다 ; 셔터(shutter)·문·미닫이 문 ; 조립식으로 된 난간과 울타리 ; 철도 건널목의 문과 유사한 방책 ; 온실용의 골조와 축성재배용 프레임(forcing frame) ; 상점·공장·창고 등에서의 조립용 대용량 선반과 고정시설 ; 상품진열대와 철가(鐵架 : rack) ; 금속으로 만든 판(sheet)이나 형강(形鋼)으로 만든 자동차전용도로용의 보호방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해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민정화 | 부산세관

### 1. 들어가며

「관세법」 제118조에서는 “세관장이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6항<sup>1)</sup> 또는 제39조(부과고지) 제2항<sup>2)</sup>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정하고 있다(제1항). 납세의무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2항).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8조의4 제9항 전단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3항).

그런데 과세관청이 어떠한 사정으로도든 과세전통지를 발송한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30일이 도래하기 전 과세처분을 한다거나, 혹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한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관세부과 제척기간 도래를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은 모두 취소됐다.

이번 호에서는 해당 심판 결정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1) 「관세법」 제38조의3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39조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 2. 처분 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5.경에서 2018.경까지 특수관계자인 미국 소재 ○○○(이하 ‘미국 본사’라 한다)로부터 LED(발광다이오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구매해 수입신고번호 ○○○ 외 ○○○건으로 수입통관했고, 처분청은 2018.경부터 2019.경까지 수입물품 통관적법성 확인을 위해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대상 기간 : 2014. 9. 25. ~ 2018. 3. 18.)를 실시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실제지급가격의 누락이 발생했다고 봐 2019. 8. 6.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원의 과세전통지를 했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19. 9. 6.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했으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인데도 관세부와 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2020. 3. 23., 2020. 6. 24., 2020. 9. 24. 관세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1~3차 경정처분을 ‘쟁점처분’이라 한다)했다.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2020. 9. 29.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① 과세가격은 재조사, ② 품목분류는 불채택, ③ 가산세 중 과세가격 관련 부분은 심리 생략, 품목분류 관련 부분은 불채택, ④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각하로 각 결정됐다.

## 3. 당사자 주장

### 가. 청구법인 주장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이뤄진 쟁점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관세의 경우 「관세법」 제118조에 법률상 제도로 규정돼 있다. 이 제도는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내리기 이전에 그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적 납세자 권리구제제도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과세처분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처분을 하기 이전에 먼저 납세자에게 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및 과세전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관청에 그 통지된 내용의 적법성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관세법」 제118조에 세관장은 세액을 징수하려는 경우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으로 통지해야 하고, 해당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청구를 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기 이전에 납세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처분 이전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심리가 계속 중인데도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했음을 이유로 3차례에 걸쳐 관세 등 총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했는데, 「관세법」 제118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과세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보장된 절차적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과세처분 자체에 절차적 하자 있으므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수입신고 건에 대해 경정·고지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에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에 ‘과세전통지의 생략’과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와 관련해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의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관세 불복고시」라 한다) 제39조 제1항에 “과세전통지를 한 경우 청구기한이 만료되는 날까지 경정·고지를 유예하고, 청구기한까지 과세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관이 결정할 때까지 경정·고지를 유예하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유예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전통지를 한 후에 법 제118조 제1항 단서규정과 영 제14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즉시 경정·고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

이지만, 앞서 언급한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고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조세 부과와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신용실추, 자력상실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세징수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그 대상이나 심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및 통지의 기한(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넘겨 그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던 중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을 참조해 “비록 참조한 대법원 판결은 국세(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에 대한 판결이지만 헌법상 보장된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구제 측면에서 국세와 관세를 달리 차별할 이유가 없고, 「관세법」에 도입한 과세전적부심사를 비롯한 불복청구 제도도 모태는 국세 불복청구 제도로서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 규정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며, 현재는 국세와 관세 모두 동일한 취지에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관세 부과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판결은 단일한 사업연도의 기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엄격히 판단한 것이며, 건별로 개별과세가 가능한 관세 과세와 관련해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 건에 대한 쟁점처분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청구법인은 관세법령에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도 과세전적부심사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세법령 및 「관세 불복고시」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의 하나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에는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허용된 경우라도 그 후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 세관장 등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쟁점처분이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 4. 관련 규정

### ○ 舊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 ■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제2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제97조 제3항 또는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5.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 이 경우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세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를 하는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 舊 「관세법 시행령」(2019. 9. 24. 대통령령 제300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 ■ 제142조(과세전통지의 생략)

법 제118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2.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부도·휴업·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4. 법 제85조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 품목분류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5. 법 제118조 제4항 제2호 후단 및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법 제13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처분의 취소·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

■ 제144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법 제118조 제3항 단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2. 법 제1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3. 법 제1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청구인에게 한 것이 아닌 경우
4. 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통지의 내용이나 쟁점 등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

○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 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 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9조(경정·고지의 유보)

- ① 과세전통지를 한 경우 청구기한이 만료되는 날까지 경정·고지를 유예하고, 청구기한까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관이 결정할 때까지 경정·고지를 유보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전통지를 한 후에 영 제14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즉시 경정·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에서 “통지하려는 날”은 “통지한 날”로 본다.
-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결정이 있기 전에 경정·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처분이유를 청구인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의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와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중략> ...

⑧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 ○ 「국세기본법 시행령」

### ■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2.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5.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것

... <중략> ...

③ 법 제81조의15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 제66조 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 ④ 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대상 결정<sup>3)</sup>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관세부와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며, 「관세 불복고시」 제39조에 따라 관세부와 제척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는 비록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할 수 있으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다수 참조)하고 있으므로, 결국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3) 2021. 11. 16. 결정 조심 2020관120·129·149·152, 2021관22 병합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통지일로부터 관세부와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등에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자체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쟁점처분에 있어 가장 빠른 수입신고일은 2015. 4. 2.이고 처분청의 과세전 ‘통지일’은 2019. 8. 6.이어서 역수상 쟁점물품의 관세부와 제척기간은 그 통지일로부터 빨라도 7개월 26일이 지난 후에야 만료되므로, 처분청이 2019. 8. 6.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과세전’ 통지를 했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해 2019. 9. 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이상, 그 청구를 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118조 제3항에 따라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은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한 경우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관세법령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 등을 하위의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는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같은 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이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같은 법 제81조의15 제8항)로만 돼 있어 관세뿐만 아니라 내국세의 경우에도 통지를 하려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일 뿐,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관세부와 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6. 참고 판례

### 가.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본 판례

#### 1)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위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판례다. 해당 사건 피고(세무서장)는 2006. 6. 7. 퇴비의 제조·판매사업 등을 하는 원고에게 2001년 제1기분부터 2005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06. 7. 3.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부과처분했다. 원고는 2006. 7. 5. 피고에게 이러한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그 후 원고가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06. 9. 29. 원고 소유의 토지 지분 등을 압류했다. 피고는 위 과세전적부심사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인 2007. 1. 3.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2007. 6. 1.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했다.

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전적 구제 제도이기는 하지만, 조세 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sup>4)</sup> 납세자에게 신용 실추, 자력 상실 등의 사정이 발생해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세징수권의 조기 확보를 위해 그 대상이나 심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舊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2 제1항, 제2항, 舊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9 제4항** 등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의 하나로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에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허용된 경우라도 그 후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세무서장 등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세무서장 등이 舊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3항에서 규정한 과세전적**

4)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참조

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및 통지 기한(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넘겨 그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던 중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봐 피고의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지 않다고 했다.

## 2) 서울고등법원 2022. 5. 10. 선고 2021누38613 판결<sup>5)</sup>

위 판례는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례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했음을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이전에 관세부과처분을 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는 2013년경 원고에 대한 실지심사를 한 결과, 원고가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원고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한 가격에서 동종·동류 수입물품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 5차에 걸쳐 관세 등 〇〇〇원을 경정·고지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 중 제4경정처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그 결정 전에 이뤄진 것으로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 〇〇세관장이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그 결정 전에 제4경정처분을 했음이 명백하나, 원고가 제4경정처분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확정가격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경우 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피고는 사전통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결국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봤다. 따라서 제4경정처분이 원고가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당연무효라거나 취소돼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 나.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본 판례

### 1)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이 판례는 배당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판결이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기도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배당소득세 본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무효라고 봐 피고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

5)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두45470호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본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결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 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세무 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뤄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무효라고 할 것이다.

## 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이 판례는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판결이다. 해당 사건의 원고는 2010. 12. 29.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 심리가 계속 중이던 2011. 3. 22. 피고가 과세예고통지한 법인세 중 2005 사업연도 귀속분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2005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를 부과·고지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舊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단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한 舊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인지의

판단 기준일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일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 다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5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2010. 11. 30.부터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1. 3. 31.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함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舊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도 전에 원고에 대해 2005년 법인세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 7. 검토 의견

앞서 본 바와 같이, 「관세법」 제118조에서는 세관장이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6항 또는 제39조(부과고지)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정하고 있다(제1항). 납세의무자는 위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2항).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8조의4 제9항 전단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3항).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통지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청구서, 세관장 의견서, 과세전통지서, 그 밖에 증거자료를 첨부해 결정기관(본부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 송부하여야 한다. 관할본부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위 세관장의견서 사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하고, 청구인은 세관장의견서에 대한 반대 의견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 위 사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이를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는 관세청장 또는 관할본부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반대의견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 이를 접수한 관세청장 또는 관할본부 세관장은 반대의견서 등의 사본을 통지청에게 송부해야 하며, 통지청은 이에 대한 의견을 이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는

관세청장 또는 관할본부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제41조).

이렇듯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결정기관과 청구인의 의견 및 반대의견을 듣는 데(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도) 17일이 소요될 수 있다. 여기에 관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 때문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사 중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등의 사정으로 미리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결정 이후 「관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항이 다음과 같이 신설됐다.

■ 제143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

② 납세의무자가 법 제118조 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세관장은 그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정을 유보(留保)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법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이후 세관장에게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

앞서 본 규정과 판례에 따라, 과세관청은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 명확하다. 따라서 「관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정을 유보해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 드론 카메라의 품목분류와 제8806호 소호 분류체계의 문제점

김 성 채 | PWC 관세법인

### 1. 드론의 품목분류와 HS 개정 경과

제7차 개정 전의 HS 품목분류표(HS 2017)에서 제8802호에는 각종 항공기, 우주선, 인공위성, 로켓 등 동력을 장착한 모드 형태의 비행체가 분류되며, 이 호의 항공기에는 무인기(Unmanned aircraft)도 포함된다. 호의 용어나 주(Note) 수준에서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제8802호 해설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제8802호 해설서(HS 2017)

지상이나 다른 항공기로부터 무선 조종되는 항공기는 이 호에 분류한다.(Radio guided aircraft controlled from the ground or from another aircraft are covered by this heading.)

- (좌)정찰용 무인기와 (우)전투용 무인기[제8802호(HS 2017)에 해당] ●



세계관세기구(WCO)의 제55차 HS위원회(2015년 3월)는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된 소형 드론의 품목분류를 검토한 바 있다.

●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제55차 HS위원회) ●



쟁점물품은 4개의 로터가 달린 쿼드콥터 형태의 드론으로 디지털 카메라가 영구적으로 결합돼 있어 항공 촬영 목적으로 전용되는 물품이다. 드론의 비행과 카메라 조작은 무선원격조절기에서 수행하며 카메라에 wifi 모듈이 장착돼 있어 카메라와 휴대폰을 연동해 카메라에서 획득한 영상을 휴대폰 스크린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다(크기 29 × 29 × 18cm, 무게 1,160g).

HS위원회는 제8525호의 ‘디지털 카메라’, 제8802호의 ‘항공기’, 제9503호의 ‘완구’를 쟁점세 번으로 검토해 투표를 거쳐 이 물품을 제8525호에 분류했다. 이후 제62차 HS위원회(2018년 9월)는 이 물품에 비해 성능상 다소 업그레이드됐으나 품목분류 관점에서는 유사한 물품을 검토해 다시 한번 이를 제8525호로 분류했다.

이 결정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HS 품목분류표의 일반적인 분류 맥락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제8802호의 비행체 기반에 정찰, 촬영, 군용, 영농, 기상, 소방, 우주과학 등의 목적에 부합한 장비가 결합된다 해도 이 물품은 제8802호에 분류돼야 한다. 이는 제17부 전체에서 유사하게 적용된다.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제8525호의 디지털 카메라로 분류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결정으로 인해, 제9503호에 분류되는 완구를 제외한다면 상용화된 드론을 그 용도나 구성에 따라 각각 달리 분류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제6차 HS Review-Cycle(HS 2022)에서는 이와 같은 드론을 용도에 관계 없이 하나의 호에 통합할 수 있도록 제8806호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확정하고 전체 류의 체계상 기존의 제8803호를 삭제하고 제8807호를 신설해 제88류의 항공기 부분품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했다.

## ● 2022 HS 개정(제88류) ●

HS 2017	HS 2022
제88류 주 제1호 신설	1. 이 류에서 '무인기'라 함은 제8801호의 것을 제외하고 기내에 조종사가 없이 비행하도록 설계 제작된 모든 항공기를 말한다. 이들은 유료화물을 수송하도록 설계 제작되었거나 비행 중에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장착된 디지털 카메라나 기타의 장치를 갖추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인기'에는 오로지 유희의 목적으로만 설계 제작된 날아다니는 완구를 포함하지 않는다(제9503호).
제88류 소호 주 제2호 신설	2. 제8806.21 소호부터 제8806.24 소호까지, 제8806.91 소호부터 제8806.94 소호까지에서 '최대 이륙중량'이라 함은 적재중량, 장비와 연료를 포함하여 보통의 비행조건에서 이륙 시의 최대 중량을 말한다.
88.02 - 그 밖의 항공기(예 : 헬리콥터·비행기), 우주선 (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서보비틀(suborbital), 우주선 운반로켓	88.02 - 제8806호의 무인기를 제외한 그 밖의 항공기(예 : 헬리콥터·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서보비틀(suborbital), 우주선 운반로켓
88.03 -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8803.10 - 프로펠러·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	<삭제>
8803.20 - 기체 지지부와 그 부분품	
8803.30 -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8803.90 - 기타	
<신설>	88.06 - 무인기 8806.10 - 승객을 수송하도록 설계 제작된 것 8806.2 - 기타, 원격조종 비행만 가능한 것 8806.21 - 최대 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8806.22 - 최대 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23 - 최대 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24 - 최대 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29 - 기타 8806.9 - 기타 8806.91 - 최대 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8806.92 - 최대 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93 - 최대 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HS 2017	HS 2022
	8806.94 - 최대 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99 - 기타
<신설>	88.07 - 제8801호·제8802호·제8806호 물품의 부분품
	8807.10 - 프로펠러·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
	8807.20 - 기체 지지부와 그 부분품
	8807.30 - 비행기·헬리콥터·무인기의 그 밖의 부분품
	8807.90 - 기타

2022년 HS 개정에 따라 HS위원회에서 제8525호로 결정됐던 두 가지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견서(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 또한 기존의 제8525.80호에서 제8806.22호로 변경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 2. 제8806호 소호 체계에 대한 해석의 문제

2022년 HS에서 신설된 제88류 주 제1호는 “조종사 없이 비행하도록 설계된 모든 종류의 항공기”라는 표현으로 드론에 대한 사실상의 정의를 제공한다. 또한 2022년 개정 이전의 제8802호 해설서는 드론에 대해 “무선조종되는 항공기(radio-guided aircraft)”라는 표현 이외에 다른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반면, 신설된 제8806호 해설서는 무인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 제8806호 해설서(HS 2022)**  
 이 류의 주 제1호에 따라, 이 호에는 기내에 **조종사(pilot)** 없이 비행하도록 설계된 무인기(unmanned aircraft)를 분류한다(제8801호의 것은 제외한다). 무인기는 비행 중에 언제든지 **조종사(operator)**가 다른 장소(예 : 지상·배·또다른 항공기나 우주선)에서 원격으로 조종비행이 가능하거나 **조종사(operator)**의 관여 없이 비행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제8806호 해설서는 무인기의 운전 방식에 대해 원격조정(remote-controlled) 방식과 원격운 영자의 제어 없이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대로 운행 가능한(capable of flight which is programmed) 방식 2가지를 예시하고 있다.

드론과 관련해 주의할 점은 HS 2022에 신설된 제8806호의 무인기(Unmanned aircraft)란

‘조종사 없이(pilot-less) 원격조종이나 사전에 설정된 자동비행 프로그램에 의해 조종되는 항공기’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람이 타지 않는 항공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파일럿 없이 승객만 태우는 항공기(Unmanned passenger aircraft)도 제8806호에 포함될 수 있다.

제74차 HS위원회(2024년 9월)에서 EU는 앞서 언급한 2가지 드론이 현재의 분류체계상 제8806.2 소호에 분류돼야 하는지 혹은 제8806.9 소호에 분류돼야 하는지 재검토하기 위한 안건을 상정했다.

제8806호의 소호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제8806.10 소호에는 크기에 관계 없이 승객을 수송하기 위한 드론이 분류되며, 제8806.2 소호는 원격조종 비행만 가능한 드론, 제8806.9 소호에는 기타의 드론을 분류하도록 구분하고 있다. 제8806.10 소호는 목적에 따른 구분인 반면, 나머지 소호는 작동 방식에 대한 따른 구분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시장에서의 드론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원격조종 방식으로 제어되거나 조작자의 개입과 무관하게 사전에 프로그램된 대로 운행하는 방식으로 비행하며, 그 외에 이 두 가지 방식이 융합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2가지 드론은 모두 직접적으로는 조작자의 원격조정에 의해 제어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조적인 제어 방식으로 조작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장애물(건물 등)의 존재, 기상 상태에 따른 경로 이탈, 조작신호의 도달거리가 미치지 못하거나 배터리가 소진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경로를 조정하거나 원래 출발지로 돌아가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 즉, 조작자의 조작 여부와 관계 없이 스스로 장애물을 회피하거나 원래 출발지로 자동복귀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 이 드론을 제8806.2 소호의 ‘원격조종 비행만 가능한 것(for remote-controlled flight **only**)’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소호의 용어를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스스로 장애물을 회피하거나 출발지로 복귀하는 기능은 원격조종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드론은 제8806.2 소호가 아닌 제8806.9 소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최근의 기술 발전 동향을 감안하면 제8806.2 소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이 거의 없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74차 HS위원회는 논의 끝에 앞서 언급한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 2건을 품목분류의견서에서 삭제하고 향후 제8806호 소호 분류체계 및 용어의 개정, 제8806호 해설서의 개정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 3. 시사점

제8806호의 '무인기'의 정의와 범위는 명확하며 그 핵심적인 전제는 조종사가 항공기에 직접 탑승해 조종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행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다. 향후 제8806호의 소호 체계를 개편할 경우 현재와 같이 조종 방식을 기준으로 소호를 구분하는 접근을 유지한다면, 6단위 레벨에서의 품목분류 어려움은 여전히 남을 것으로 보인다. 크기나 중량 등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하거나 용도 중심으로 소호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내 관점에서 또 한 가지 제안은 국문 관세율표 해설서(관세청 고시)에 관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관세율표 해설서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하는 pilot'과 '항공기에 직접 탑승하지 않고 무선이나 원격제어 방식으로 항공기를 운행하는 operator'를 모두 '조종사'로 번역해 약간의 혼란을 주고 있다. 향후 HS 개정과 무관하게 해설서상 국문 용어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깻잎 가루 분류사례 - 2024년도 6월 품목분류 사전심사 -

김 흥 관 | 부산세관 분석실

### 1. 물품 소개



출처 : 금산군청

상추와 함께 고기를 먹을 때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쌈 채소 중에 깻잎이 있다. 상추 위에 깻잎 한 장 올려 쌈을 싸기도 하지만, 닭갈비를 구울 때는 깻잎을 넣어 마무리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깻잎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는 대중적인 식재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깻잎을 먹는 나라는 생각보다 드물다. 깻잎 통조림이나 깻잎 김치를 ‘괴식’으로 여기는 곳들도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에서 식재료로서 깻잎의 위상과 다른 나라에서의 위상이 크게 차이 난다고 할 수 있다.

깻잎은 들깨의 잎을 말한다. 보통 4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심으면 초여름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4~5개월간 계속해서 잎을 수확할 수 있다.

민트과로도 불리는 꿀풀과 허브의 한 종류이기에 특유의 향이 강한 편이다. 표면에 작은 솜털이 나 있어서 식감도 다소 까끌까끌하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는 채소이지만, 이렇게 개성이 강한 편이어서 호불호가 꽤 갈린다.

하지만 깻잎은 건강에 매우 좋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 잃어버린 입맛과 건강을 되찾는데 효과적이다. 그렇다면 깻잎이 건강에 얼마나 이로운 점이 있는지 알아보자.

### ● 고기와 쌈 싸먹으면 부족한 영양소 보충

고기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대표 채소가 바로 상추와 깻잎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건강에도 매우 좋은 식습관이라 할 수 있는데, 고기에 단백질이 풍부한데 비타민A와 비타민C를 함유한 깻잎을 함께 먹으면 서로 부족한 영양성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깻잎에는 항산화, 항암 기능을 하는 베타카로틴 성분도 풍부하다. 삼겹살처럼 지방이 많은 고기와 함께 먹으면 체내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 성인병 위험 감소에 도움 될 수 있다. 깻잎에 함유된 페릴라알데하이드, 리모넨, 페릴라케톤 등 방향성 성분은 돼지고기나 생선회를 먹을 때 느끼한 맛이나 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도 한다.

### ● 비타민, 칼슘, 철분 ... 영양소 풍부

깻잎에는 비타민 A·C가 풍부해 기미, 주근깨 억제 등 피부 미용에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깻잎은 칼슘도 많이 들어 있다. 칼슘의 대표적인 식재료인 멸치나 우유를 싫어한다면 깻잎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칼슘이 풍부해서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 갱년기 여성에게도 좋다.

또한 혈관에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고지혈증을 예방해주며, 동맥경화나 심장병,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도 좋다. 철분이 많아 빈혈을 억제해준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비만, 대장암세포 및 혈액암세포 증식 억제, 피부 종양 형성 억제, 간 독성 억제 등 깻잎의 다양한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보통 깻잎을 쌈이나 장아찌 정도로 먹는데, 햄·깻잎·청양고추·양파·대파·파프리카를 잘게 다진 뒤 달걀, 부침가루를 섞어 햄깻잎전으로 노릇하게 부쳐 먹어도 좋다.

잘게 썬 깻잎과 레몬즙, 탄산수, 황설탕을 넣어 잘 섞어주고 30분쯤 지난 후 얼음을 넣으면 상큼한 깻잎 모히또 음료가 완성된다.

이번 호에서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깻잎 가루의 품목분류 사례를 소개한다.

## 2. 분류 사례

### ○ 개요

- 깻잎(Perilla leaves)을 건조 및 분쇄한 녹색계 분말상
- 용도 : 화장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 세번 및 분류 이유

- 결정 세번 : 제0712.90-2099호
- 분류 이유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0712.90-20호에는 ‘그 밖의 채소’를 세분류하고 있다.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한 것·증발한 것·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을 분류한다. … <중략> … 또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향미료나 수프 조제품으로 쓰이는 아스파라거스·꽃 양배추·파슬리(parsley)·취어빌(chervil)·양파·마늘·셀러리 등과 같은 채소를 건조하여 잘게 부수거나 가루로 한 것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7류 주 제3호에서 “제0712호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에 해당하는 채소의 건조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제0709호에 해당하는 깻잎을 건조 및 분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2.90-2099호에 분류했다.

## 3. 품목분류 적용 길라잡이

부	(제2부) 식물성 생산품
류	(제7류)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塊莖)
호	(제0712호)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HSK (제0712.90 소호) 기타  
 (제0712.90-20 소호) 그 밖의 채소 - (기타) 제0712.90-2099 소호

#### 4.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공개 여부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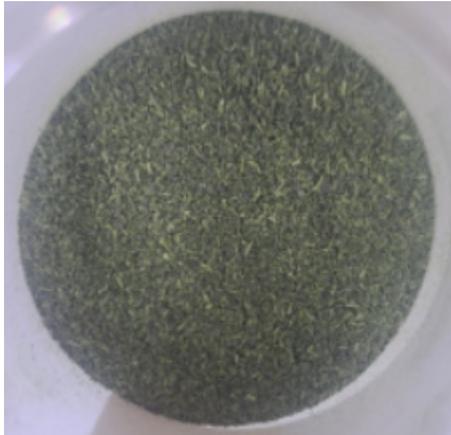
결정 세번 제0712.90-2099호

품명 Perilla leaves powder, dried

- 갯잎(Perilla leaves)을 건조 및 분쇄한 녹색계 분말상
- 용도 : 화장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물품 이미지



물품 설명

## 풀오버(Pullover)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풀오버(Pullover)의 사전적 정의는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써서 입는 형식으로 된 스웨터를 말한다. 우리에게 스웨트셔츠로도 잘 알려졌는데 신축성이 좋아 활동하기 편하며 따뜻하고 가벼워 일상용으로 많이 입는다.

스웨트셔츠는 처음에는 운동복으로 입었다. 1920년대 초 선수들이 보온을 위해 입는 니트 울 스웨터로 만들어졌던 것. 하지만 초기 출시된 스웨트셔츠는 세탁 후에 옷의 부피가 줄어들고 말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1920년대 말, 러셀이라는 미국의 의류업체에서 단순한 디자인에 두툼한 재질의 스웨터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했고 챔피언이라는 미국의 브랜드에서 세탁 후에도 줄어들지 않는 스웨터 그리고 스웨터 후드를 개발해 판매하면서 이를 계기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게 됐다.

한국에서는 스웨트셔츠를 ‘맨투맨’이라고도 부른다. 1953년 창업한 성도섬유라는 회사에서 국내 기술로 스웨트셔츠를 제조해 1974년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했는데, 당시 이 스웨트셔츠의 브랜드명이 ‘맨투맨 스웨트 셔츠’였다고 한다. 그 후 이 맨투맨이라는 단어가 스웨트셔츠를 가리키는 보통명사로 인식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남색 상의로 ‘남성용 셔츠인’ 제6105.10-0000호로 신고했다.



편물이며 의류의 밑 부분에 탄탄하게 조이지는 않으나 골이 진 허릿단이 있고, 소매에도 골이 진 소매단이 있는 짧은 소매의 의류다.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4호에는 “제6105호와 제61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적어도 10센티미터 × 10센티미터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외하며, 제61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6105호 해설서에서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로 인정되지 않는 의류로서 주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 주머니가 허리 아래에 있는 것 ; 제6103호의 재킷이나 제6110호의 카디건(cardigan)으로 분류
-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나 바늘코(stitch) 수가 1cm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 ; 제6101호나 제6110호
- 소매 없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 ; 제6109호·제6110호·제6114호”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상반신용 의류로서 소매가 길거나 짧으며, 넥라인(neckline)을 기점으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트임(opening)이 있다.

본 물품은 넥라인을 기점으로 부분 트임이 있어 ‘셔츠’로 혼동할 수 있으나 허릿단의 형태로 ‘폴오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물품은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cm당 10개 미만이며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 있는, 면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폴오버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20-0000호에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men's shirt	6105.10-0000 (FCN1 4.3%)	Pullover of cotton, knitted	6110.20-0000 (FCN1 6.5%)

## 차세대 스마트폰 'AR 안경'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관세사)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플랫폼에서 스마트폰을 안경처럼 쓰는 증강현실(AR) 기기를 공개했다. 스마트 안경은 불과 10여 년 전에 출현한 것으로 사용자에게 유용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데, 눈이나 머리에 착용하는 컴퓨터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스마트 안경에는 착용자가 보는 것과 함께 정보를 추가하는 디스플레이가 포함돼 있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한층 진화한 AR 기능이 구현되는 기기라 할 수 있겠다. 메타플랫폼은 9월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커넥트2024(Connect 2024)'에서 우리가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스마트 안경에 결합시킨 '오라이언(Orion)'의 시제품을 선보였다.

컨퍼런스에서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오라이언'을 소개하면서 "지금까지 AR에 대한 모든 시도는 헤드셋, 고글, 헬멧이었다"며, "오라이언이 스마트폰을 이을 컴퓨팅 디바이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커버그의 소개에 따르면, 검은색의 두꺼운 빨테 안경처럼 생긴 '오라이언'을 안경처럼 쓰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물론, 화상 통화를 하거나 유튜브 동영상까지 볼 수 있다고 한다. 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안경에는 사용자의 시야에 표시할 수 있는 마이크로 렌즈가 장착돼 프로젝터를 통해 3D 이미지를 투사시켜 홀로그램의 증강현실(AR) 기능이 구현된다. 게다가 사용자는 스마트 워치와 같은 손목 밴드와 눈의 운동을 추적하는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손으로 디스플레이를 '클릭'하거나 '스크롤'할 수 있다고 한다.

관세율표에서 스마트폰은 제8517호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 <후략>)'에 분류된다.

또한 가상현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VR 기기 등은 제9004호 '시력교정용·보호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에 분류된다. 컴퓨터 기능이 일부 가미된 스마트 안경이 제9004호로 분류되고는 있으나, 새로운 제품들이 선보이고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품목분류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논문모집

## 발행 일정

구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투고 방법

이메일 송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 원고 분량

20매 내외

### 제출 자료

- ① 논문 원고
- ② 논문투고 신청서
- ③ 연구 윤리 확인서

###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 문의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103호\_2024.10.21.

# 최신개정법령

## 고시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고시

## 입법예고

-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폐지(안) 행정예고
- 「납세자권리현장 제정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본 내용은 [www.custra.com](http://www.custra.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시

###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47, 2024. 10. 14.)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 칙 <관세청 고시 제2024-47호(2024.10.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586	2024-47호('24.10.14.)	탄소나노튜브	
587	2024-47호('24.10.14.)	Chrome ore	
588	2024-47호('24.10.14.)	Microscopes	
589	2024-47호('24.10.14.)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590	2024-47호('24.10.14.)	Mat	
591	2024-47호('24.10.14.)	Solder resist	
592	2024-47호('24.10.14.)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593	2024-47호('24.10.14.)	산타클로스 축제용품	

## 571. 탄소나노튜브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47호 (2024.10.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 공문
1	Artificial graphite; K-Nanos-100C; R.KOREA	품목분류2과-6930 (*15.09.03.)
2	Artificial graphite; K-Nanos-100P; R.KOREA	품목분류2과-9830 (*13.12.31.)

## ○ 물품설명

- 촉매에 탄화수소 가스를 공급·합성하여 제조한 나노입자의 흑색 미세분말(탄소나노튜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801.10-9000호

##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803.00-9090호

## ○ 변경사유

- 탄소나노튜브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이므로 제2803.00-9090호에 분류(2024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587. Chrome or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47호 (2024.10.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 공문
1	Refractory chromite	감정22701-1557 (‘89.05.27.)

○ 물품설명

- 차량의 서스펜션 시스템을 구성하는 컨트롤 암(control arm)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530.90-9000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610.00-0000호

○ 변경사유

- 금속채취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야금공업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광물학상 광물에 해당하므로 제2610.00-0000호에 분류(2024년 제4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588. Microscope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47호 (2024.10.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 공문
1	Aperio VERSA Scanning System; Aperio VERSA 200 Scanning System	품목분류3과-2777 (*17.05.26.)
2	고배율 현미경; L200ND	품목분류1과-474 (*14.02.11.)

## ○ 물품설명

-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된 광학현미경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1.20-1090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 제9011.80-4000호, ② 제9011.80-9000호

## ○ 변경사유

- 마이크로 사진용 현미경이 아닌 그 밖의 광학현미경이므로 ① 제9011.80-4000호, ② 제9011.80-9000호에 분류(2024년 제4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589.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47호 (2024.10.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 공문
1	Other optical film; TUV88	품목분류4과-8798 (19.05.10.)

○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에 자외선 흡수제를 소량 혼합한 필름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01.90-9000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20.62-0000호

○ 변경사유

- 광학소자가 아닌 플라스틱 필름이므로 제3920.62-0000호에 분류(2024년 제4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590. Ma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47호 (2024.10.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 공문
1	MAT; S-1; 65X170	품목분류3과-19022 (*20.10.30.)
2	QUILT-화원(FLOWEPOT) (70cm×160cm)	품목분류3과-2766 (*14.12.18.)
3	QUILT - GRACE(70cm×160cm)	품목분류3과-2765 (*14.12.18.)

## ○ 물품설명

- 소파 위에 까는 방직용섬유제 매트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404.90-0000호

## ○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② 제6304.92-0000호, ③ 제6304.93-000호

## ○ 변경사유

-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그 밖의 실내용품이므로 ①~② 제6304.92-000호, ③ 제6304.93-000호에 분류(2024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591. Solder resis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47호 (2024.10.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 공문
1	Other ink; SOLDER RESISTOR & HARDENER; PSR-4000 AUS308 & CA-40 AUS308; JAPAN	품목분류2과-4441 (17.03.23.)

○ 물품설명

- 인쇄회로기판의 회로보호와 절연을 위해 Screen mask를 이용한 인쇄공정에 사용하는 Photosensitive Solder resist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215.90-9000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707.90-9900호

○ 변경사유

- 감광성 플라스틱 수지용액인 사진용 화학조제품이므로 3707.90-9900호에 분류(2024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592.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47호 (2024.10.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JABRA SPEAK ; JABRA EVOLVE2 65 STEREO UC BLACK ;	품목분류3과-19835 (‘20.12.03.)
2	Bluetooth Earphone ; COWON CF2 ; 블루투스이어폰, 전용충전크래들(5V, 1A)	품목분류3과-7013 (‘18.12.14.)
3	Bluetooth Earphone ; COWON CT5 ; 블루투스 V5.0이어폰, 충전크래들	품목분류3과-7014 (‘18.12.14.)
4	Bluetooth Headset ; Wireless Over ear Headphone ; MW50	품목분류3과-2943 (‘18.06.12.)
5	HEADPHONES; PF560141BA	품목분류3과-2397 (‘14.11.07.)

## ○ 물품설명

- 마이크가 내장된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7.62-6090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8.30-9000호

## ○ 변경사유

- 오디오 파일 재생을 제어하고 호스트 장치에 전화 받거나, 거절 또는 끊기를 지시하는 기능이 있는 이어폰에 마이크가 내장된 것으로 제16부 주 제3호에 따라 제8518.30-9000호에 분류 (WCO 제73차 HS위원회 승인 HS분류의견서(‘24.3월) 및 2024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593. 산타클로스 축제용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4-47호 (2024.10.14.)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 공문
1	Standing figure 150cm (Plastic decoration)	품목분류3과-17 (*24.10.03.)
2	스노우볼(WATER GLOBE) [모델명 : 913182(A) 산타클로스]	품목분류3과-2621 (*13.10.07.)

○ 물품설명

- 산타클로스 형상의 축제용품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3926.40-0000호, ②7013.99-0000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505.10-0000호

○ 변경사유

- 산타클로스 형상의 크리스마스 축제용품이므로 제9505.10-0000호에 분류(WCO 제73차 HS 위원회 승인 HS분류의견서(\*24.3월) 및 2024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 입법예고

### ■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729호, 2024.10.14.)

「관세법」(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7. 1. 시행) 및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278호, 2024. 2. 29.,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관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1057호, 2024. 3. 22., 일부개정, 2025. 1. 1.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1. 개정 취지

- 우회덤핑 방지 관련 법률인 「관세법」 및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 완료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세부운영규정을 개정 고시함.

#### 2. 개정(안) 주요 내용

- 우회덤핑 조사 신청자격(제32조) : 덤핑방지관세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당해 조사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한 자 또는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자
- 우회덤핑 조사 절차(제33조 ~ 37조) : 기존 덤핑 조사 절차를 주용
  - 조사신청서 접수 사실을 14일 이내 관계행정기관 등에 통보(제34조 4항)
  - 이해관계인은 3주 이내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대한 의견 제출(제35조 1항)
  - 조사대상공급자는 2주 이내 조사참여 신청서 제출(제36조 1항)

#### 3.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개정(안) : 붙임

#### 4.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 11. 4.(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덤핑조사 연락처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우 30118)

- 전화/e-mail : 044-203-5872/bhbk@korea.kr

※ 붙임 : [www.custra.com](http://www.custra.com) 참조

##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관세청고시 제0000-00호, 2024.00.00)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납세자 보호 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하여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자 하오니, 해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424.1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개정 사유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024.4.25.)에 따라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제2311호, 2024.2.28.)과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관한 고시」(제2020-30호, 2020.9.1.)를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로 통·폐합
  -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내용의 연관성이 높고 조문 수가 적은 행정규칙을 통·폐합하여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편의성 제고

### 2. 주요 제정내용

-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제5조~제9조)
  - (설치) 납세자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청과 6개 본부세관(인천공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에 설치
  - (직무)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의 처리 등 「관세법」 제1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의 2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
- 납세자보호위원회(제10조~제13조)
  - (운영)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며 본청과 6개 본부세관에서 운영
  - (심의)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 관세조사 기간연장에 대한 일시중지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고충민원(제14조~제40조)
  - (대상) 관세청(세관)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 (처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판단하여 상정한 안건에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관세조사 관리(제41조~제51조)
  - 관세조사범위 확대,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에 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관세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
- 권리보호 요청(제52조~제97조)
  - (대상) 세관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관세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과 일반 관세행정 분야 권리보호요청으로 구분
  - (처리) 관세행정을 집행하거나 집행할 예정인 세관관서가 속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 납세자권리현장(제98조~제100조)
  -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현장에 관련된 업무를 지도·감독
- 관세조사 모니터링(제101조~제105조)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조사절차 준수여부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관세조사를 방지
- 제도개선(제106조~제110조)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도록 규정

**3. 제정 전문 : “붙임”**

**4. 시행일자 : 2024. 00. 00.**

**5.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 담당자 : 천진영 주무관(☎042-481-3298)
- 제출기한 : 2024. 11. 6.
- 제출방법 : skyc1111@korea.kr
- 제출양식

제정(안)	수정(안)	사 유

※ 제정 전문 : [www.custra.com](http://www.custra.com) 참조

##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폐지(안) 행정예고

(관세청훈령 제2311호, 2024.2.28)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납세자 보호 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하고자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311호, '24.2.28.)을 다음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니, 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폐지 사유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024.4.25.)에 따라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을 「관세청 납세자 보호에 관한 고시」로 통·폐합하여 본 훈령을 폐지함.

4. 시행일자 : 2024. 00. 00.

### 5.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 담당자 : 천진영 주무관(☎042-481-3298)
- 제출기한 : 2024. 11. 6.
- 제출방법 : skyc1111@korea.kr
- 제출양식

제정(안)	수정(안)	사 유

■ 「납세자권리현장 제정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관세청고시 제2020-30호, 2020.9.1.)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납세자 보호 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하고자 「납세자권리현장 제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30호, '20.9.1.)를 다음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니, 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폐지 사유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024.4.25.)에 따라 「납세자권리현장 제정에 관한 고시」를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로 통·폐합하여 본 고시를 폐지함.

4. 시행일자 : 2024. 00. 00.

5.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 담당자 : 천진영 주무관(☎042-481-3298)
- 제출기한 : 2024. 11. 6.
- 제출방법 : skyc1111@korea.kr
- 제출양식

제정(안)	수정(안)	사 유

# 신규 발간도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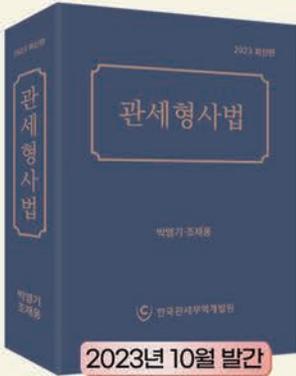
##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2024년 신간)

FTA 및 WTO 등 관련 세율과 통합공고 및 기타 고시 등  
수출입 통관에 필요한 정보를 단 한 권에!

**10%** 120,000원 **온라인 구매 108,000원**



2024년 1월 발간



2023년 10월 발간

## 관세형사법(2023년 개정판)

정확한 법집행과 적법절차 준수를 향한 지침서

관세/무역/외환형사분야의 복잡한 법리와 실무 정립,  
중요 판례와 조사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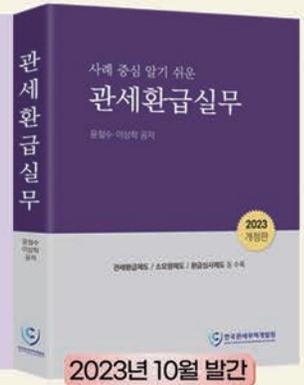
**10%** 60,000원 **온라인 구매 54,000원**

## 관세환급실무(2023년 개정판)

물품의 신속통관과 관세환급제도의 중요성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개정 서식 반영 및 사례와 그림으로 엮어 바로 실무에 활용

**10%** 50,000원 **온라인 구매 45,000원**



2023년 10월 발간

**10%**

※ 상기 도서의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간 예정 도서 사전 예약 할인!**

**Special price!**

**구매 문의 02)3416-5112 온라인 구매 [smartstore.naver.com/kctdi](http://smartstore.naver.com/kctdi)**

# 2024 (개정판) 관세법령집

관세/무역 관련 법령 총 망라,  
관세 행정 업무는 이 한권으로!



발간기념  
10% 할인

60,000 원 ➔ 54,000 원

# 1

## 최신 기준 반영

관세/무역 관련 법령  
2024년 4월 1일 기준  
수록

# 2

## 변경 법령 반영

새로 제정된 덤핑/상계관세  
세부운영규정 고시 반영  
24년 관련법 개정이유  
수록

# 3

## 쉽고 편한 법령 참조

관세법 등 최신 판례 및  
고시명 업데이트  
(판례 8개, 고시명 66개 등  
총 74개 변경)

###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커스트라 : [www.custra.com](http://www.custra.co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http://smartstore.naver.com/kctdi)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